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단위 : 원)

공 사 명	위 치	추정가격(A)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A+B+C)	비고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A+B)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C)		
난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이동면 난음리	1,724,545,455	101,750,000	2,799,140,000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032-5~삼동면 영자리	172,454,545			
	1162-4번지 일원	1,897,000,000	902,140,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특례 사항, 설계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의 평면·종단 선형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술력이 요구되며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 관리 등이 요구되기에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사 업 량 : 위험도로 개선 L=1,495km, B=8.0m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지역제한, 차수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공동도급 불허)
- 다.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입니다.

라. 차수계약

(단위 : 원)

구분	사업비(총괄)	도급액	관급액	비 고
계	2,900,890,000	1,897,000,000	1,003,890,000	총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1차: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2차: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사업비(1차분)	1,783,926,000	1,366,553,000	417,373,000	
사업비(2차분)	1,116,964,000	530,447,000	586,517,000	

※ 차수별(1차, 2차) 계약금액, 물량 등은 낙찰률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2026. 9. 21.(월) 09: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23.(수) 10:00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6. 9. 28.(월)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0: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남해군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A값 = 139,943,925원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text{<별표 4> 입찰가격 평점(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조달청 콜센터 문의(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11. 24.)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낙찰 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사업)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발급(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업종 **평가비율 100%**입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공개 된 순공사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그 금액이 배제(98%)의 기준이 아님**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지급을 약속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남해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1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해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 1. 1.),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27,773,629	21,020,252	13,448,283	2,762,061	30,287,541	34,033,220	10,618,939	139,943,925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는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 도급업체는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바.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아.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타. 기타 기술 및 설계서는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5), 입찰 및 계약은 재무과 경리팀(☎055-860-3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개찰 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남 해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사망재해 : ,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